

## 2026년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로봇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거점 내 대규모(다종·다수) 로봇 서비스 융합실증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및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 (수행기간) 협약일 ~ '27. 11. 30. (약 18개월)
  - \* (1단계) 협약일 ~ '26. 12. 31. / (2단계) '27. 1. 1. ~ '27. 11. 30.
  - \* 2단계('27) 종료 후 3년 성과활용기간 진행
- (지원규모) 국비 총 40억원 내외 규모
  - 총 6개 내외 과제 (사회문제해결형 2개 내외, 국민체감실증형 4개 내외)
    - \* 정부예산(안),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 규모,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2. 지원내용

### (1) 지원 개요

□ (지원유형) '사회문제해결형' 및 '국민체감실증형' 유형 과제 공모

① 사회문제해결형	② 국민체감실증형
<b>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통합관제 기반 다종 다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 및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b>	<b>국민밀접시설*을 중심으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종 다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 추진</b>
* (국민밀접시설) ①공항, ②철도, ③박물관·미술관, ④병원, ⑤주거·업무시설, ⑥물류센터, ⑦백화점, ⑧호텔 등	* (국민밀접시설) ①공항, ②철도, ③박물관·미술관, ④병원, ⑤주거·업무시설, ⑥물류센터, ⑦백화점, ⑧호텔 등
예) 해수부 연계 수상로봇 활용 해양오염물 관리 시스템 실증 예) 고용노동부 연계 로봇 활용 장애인 직무교육 모델 실증	예) 강원랜드 호텔 내 스마트·비대면 컨시어지 서비스, 예) 테헤란로 국민체감 로봇 배달 및 서빙 서비스 실증

○ (유형별 지원개요) 사업유형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상이

구분	① 사회문제해결형	② 국민체감실증형
지원규모	단계별 과제당 <b>최대 10억원</b> (총사업비 <b>100% 국비 지원</b> )	단계별 과제당 <b>최대 5억원</b> (총사업비 <b>50% 이내 국비 지원</b> , 민간부담금 50% 이상)
지원대상	수요거점, 공급기업(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등), 연구분석수행기관 간 컨소시엄	수요거점, 공급기업(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등) 간 컨소시엄
주관기관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지원기간	(1단계) 협약체결일 ~ 2026. 12. / (2단계) 2027. 1. ~ 2027. 11.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2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진행, 연차별 협약)	
지원조건	1단계	<b>로봇 1대 이상 실증 및 본 과제를 위한 별도의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수요거점 내 구축</b>
	2단계	<b>로봇 통합관제시스템 연동 로봇 3종 5대 이상 실증</b> * 최소 2개 이상 상이한 제조사 로봇 제품으로 구성 필수
지원내용	1단계	실증계획 설계·보완, 규제 확인 및 개선, 로봇 개조개량, 개별로봇 실증, 로봇 활용 인프라 구축, 통합관제시스템 플랫폼 구축, 사회문제 조사 및 분석 비용
	2단계	다종로봇 연계 융합실증, 통합관제시스템 플랫폼 고도화, <b>로봇 활용 사회문제 해결 효과성 분석 비용</b>

- (지원대상) ‘사회문제 해결’,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수요거점 내 통합관제 기반 다종·다수 로봇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관기관(1개) 및 참여기관(2개 이상)으로 구성된 복합 컨소시엄
  - (주관기관)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 (참여기관)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로봇공급기업(전체 신청과제),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사회문제해결형 신청과제 해당) 등

**< 컨소시엄 구성 가이드 >**

구분	역할	자격요건	구성
주관기관 (1개)	관제솔루션 기업·기관	수요거점 내 다종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실증이 가능한 기업·기관	
	수요거점	통합관제 기반 다종로봇 도입 및 실증이 가능한 수요거점 기업, 기관, 지자체 등	
참여기관 (2개 이상)	관제솔루션 기업·기관	수요거점 내 다종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실증이 가능한 기업·기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b>사회문제해결</b>  <b>국민체감실증</b>  <b>필수</b> </div>
	수요거점	통합관제 기반 다종로봇 도입 및 실증이 가능한 수요거점 기업, 기관, 지자체 등	
	로봇공급기업	관제솔루션기업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증할 로봇 제품을 보유한 로봇제조사 또는 SI기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b>사회문제해결</b>  <b>필수</b> </div>
	연구분석 수행기관	통합관제 및 다종다수 로봇 실증모델 기반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전략도출, 효과성 분석 및 법제도 개선 관련 연구분석 수행이 가능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기타 (필요시)	기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b>사회문제해결</b>  <b>국민체감실증</b>  <b>선택</b> </div>

- \* 법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 스타트업 기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창업 예정 기업 불가)
-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연구분석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혹은 산하 공공기관임을 증빙하여야 함
- \* 컨소시엄 내 관제솔루션기업, 수요거점은 각각 1개 기관만 참여 가능  
 예) (가능) (주관)관제솔루션기업 A / (참여) 수요거점 B, 로봇공급기업 C,D,E  
 (불가) (주관)관제솔루션기업 A / (참여) 관제솔루션기업 B, 수요거점 C, 로봇공급기업 D,E,F  
 (불가) (주관)수요거점 A / (참여) 관제솔루션기업 B, 관제솔루션기업 C, 로봇공급기업 D,E,F
- \* 수요거점 또는 관제솔루션기업이 주관기관 수행이 어려운 경우, 1개 기업·기관에서 2개 역할(수요거점 및 연구분석수행기관, 관제솔루션기업 및 로봇기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 컨소시엄 구성 가이드를 만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컨소시엄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여부 결정

## (2) 유형별 지원 내용

### ① 사회문제해결형

- (사업목적) 부처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다종 서비스 로봇 활용 모델 개발, 통합관제 기반 실증 데이터 도출 및 성과확산 지원
- (공모분야)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제품과 BM을 보유한 컨소시엄이 안내, 물류, 배송, 순찰 등 분야 자유롭게 제안
  - 사업 목적부합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로봇별 활용 필요성, 과제 계획 완성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과업내용) 1년차에 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1단계), 2년차에 다종로봇 융합 실증 및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진행(2단계)

1단계(1년차)	2단계(2년차)
<b>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증 융합모델 설계 및 수정</li> <li>▶ 개별로봇 개조·개량 및 수요거점 실증</li> <li>▶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li> </ul>	<b>다종로봇 융합실증 및 통합관제 고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다종로봇 융합 실증</li> <li>▶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li> <li>▶ 대규모 로봇 규제 해소 결과물 도출</li> </ul>

- (사회문제해결)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 등 연구분석수행 기관에서 단계별 로봇 활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분석 추진

####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분석수행기관의 과업 >

1단계(1년차)	2단계(2년차)
<b>사회문제 해결 전략 및 정량지표 도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 실증모델 활용 사회문제해결 전략 도출 (사회문제 정의, 국내외 현황 및 로봇활용 사회 문제 해결 사례 등 조사 포함)</li> <li>▶ 2단계 효과성 분석을 위한 정량지표 발굴</li> </ul>	<b>사회문제 효과성 분석 및 확산전략 도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출된 전략 및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로봇 활용 사회문제 해결 효과성 분석</li> <li>▶ 다종로봇 실증을 통한 시사점 발굴</li> <li>▶ 로봇 융합모델 활용 성과 확산 전략 도출</li> <li>▶ 사진, 영상 등 홍보 결과물 도출</li> </ul>
사회문제 분석결과 및 로봇 활용 계획(안) (연차보고서 붙임 및 별첨자료)	로봇 활용 사회문제해결 분석결과 보고서 (결과보고서 붙임 및 별첨자료)

□ (지원규모) 단계별 과제당 최대 10억원(국비 100%), 2개 과제 내외

\* 본 사업은 다년도 연차 사업으로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 예정이며, 정부 출연금의 경우 단계별 재심의를 통해 지급 예정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사회문제 해결형 예시①	100% (1단계 최대 10억원 2단계 최대 10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수요거점)</li> <li>• 참여기관(관제솔루션기업)</li> <li>• 참여기관(로봇제조사)</li> <li>• 참여기관(연구분석수행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li> <li>선택</li> <li>선택</li> <li>선택</li> </ul>
사회문제 해결형 예시②	100% (1단계 최대 10억원 2단계 최대 10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관제솔루션기업)</li> <li>• 참여기관(수요거점)</li> <li>• 참여기관(로봇제조사)</li> <li>• 참여기관(로봇SI기업)</li> <li>• 참여기관(연구분석수행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li> <li>선택</li> <li>선택</li> <li>선택</li> <li>선택</li> </ul>

□ (지원내용) 개별로봇 실증 및 로봇 활용 인프라 구축 비용(1단계), 다종로봇 융합실증 비용 및 로봇 활용 인프라 고도화 비용 지원(2단계)

- (1단계) 실증 계획·시나리오 보완, 규제개선 등을 위한 상세 계획, 로봇 개조·개량 및 서비스 실증, 데이터 수집·활용, 로봇 활용 인프라·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회문제 분석 등 관련 비용 지원
- (2단계) 다종로봇 융합실증 및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분석·활용, 로봇 활용 사회문제해결 효과성 분석 및 성과 확산, 필요시 규제 관련 컨설팅 비용 등 관련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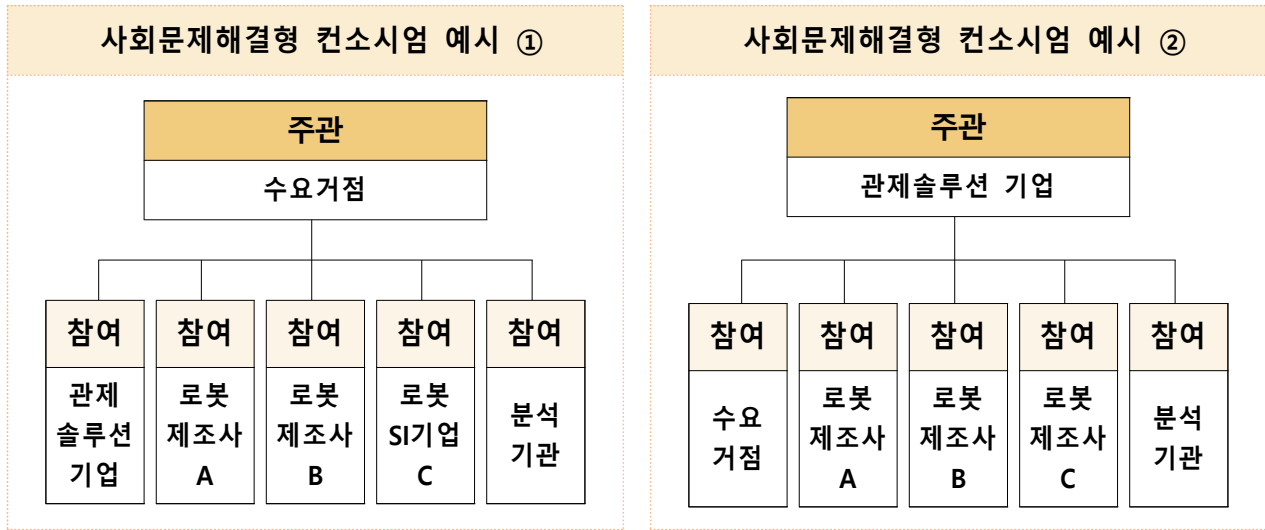
□ (지원조건) 사회문제해결형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갖추어 과제 종료 시점까지 필수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

- (1단계)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1대 이상 로봇 실증,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사회문제 정의 및 현황분석, 사회문제해결 효과성 분석을 위한 정량지표 및 로봇활용 사회문제해결 세부전략 도출

\* 수요거점 내 별도의 관제 공간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필수

- (2단계)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3종 5대 이상 로봇 실증, 통합 관제시스템 고도화, 로봇 실증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효과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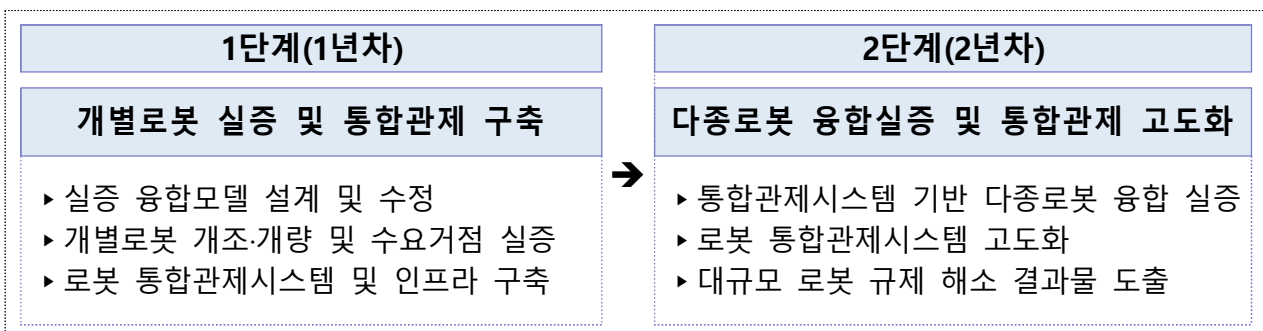
< 사회문제해결형 컨소시엄 구성 예시 >



## ② 국민체감실증형

- (사업목적) 국민밀접시설 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통합관제 기반 다종 서비스 로봇 활용모델 실증 및 성과확산 지원
- (공모분야)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제품과 BM을 보유한 컨소시엄이 안내, 물류, 배송, 순찰 등 분야 자유롭게 제안
  - 사업 목적부합성, 사업 계획 완성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과업내용) 1년차에 개별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1단계), 2년차에 다종로봇 융합 실증 및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진행(2단계)

<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필수과업 >



□ (지원규모) 단계별 과제당 최대 5억원(국비 50%), 4개 과제 내외

\* 본 사업은 다년도 연차 사업으로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 예정이며, 정부 출연금의 경우 단계별 재심의를 통해 지급 예정

○ (민간부담금) 단계별 민간부담금 50% 이상 매칭 필수이며, 수요거점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매칭 필수, 지방비 포함 가능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국민체감 실증형 예시①	50% (1단계 최대 5억원 2단계 최대 5억원)	50%	• 주관기관(수요거점)	필수
			• 참여기관(관제솔루션기업)	선택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참여기관(로봇SI기업)	선택
국민체감 실증형 예시②	50% (1단계 최대 5억원 2단계 최대 5억원)	50%	• 주관기관(관제솔루션기업)	선택
			• 참여기관(수요거점)	필수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참여기관(로봇제조사)	선택

\* 수요거점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개별로봇 실증 및 로봇 활용 인프라 구축 비용(1단계), 다종로봇 융합실증 비용 및 로봇 활용 인프라 고도화 비용 지원(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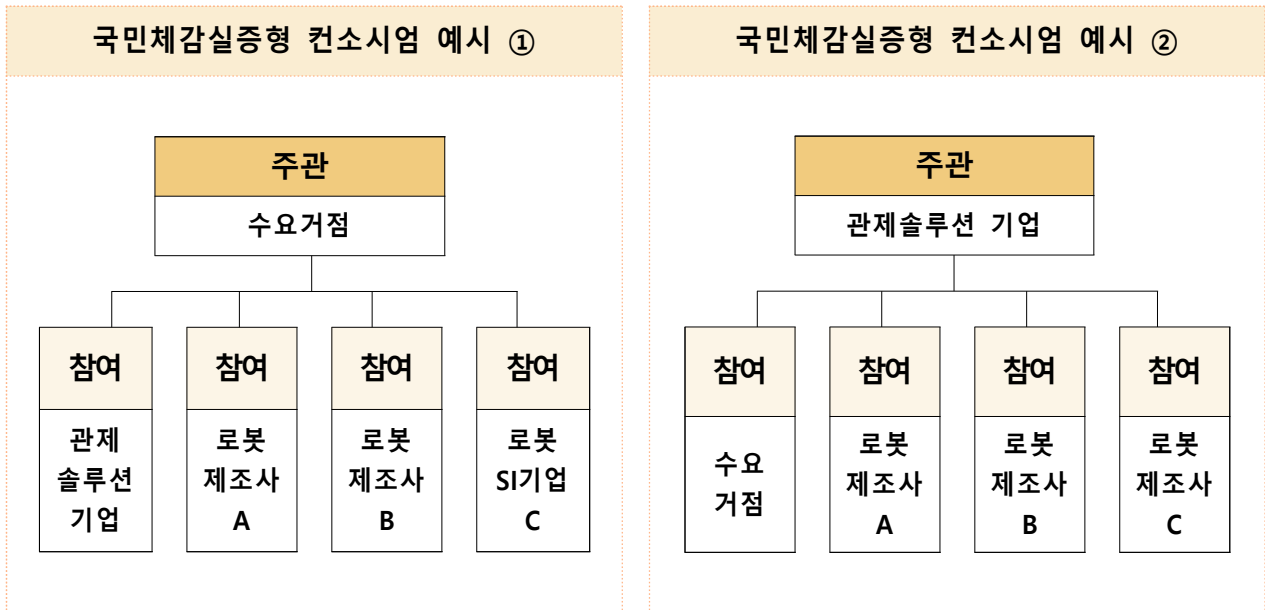
○ (1단계) 실증 계획·시나리오 보완, 규제개선 등을 위한 상세 계획, 로봇 개조·개량 및 서비스 실증, 데이터 수집·활용, 로봇 활용 인프라·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관련 비용 지원

\* 수요거점 내 별도의 관제 공간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필수

○ (2단계) 다종로봇 융합실증 및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분석·활용, 필요시 규제 관련 컨설팅 비용 등 관련 비용 지원

- (지원조건) 단계별 민간부담금을 50% 이상 매칭할 수 있고, 국민체감실증형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갖추어 과제 종료 시점까지 필수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
  - (1단계)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1대 이상의 서비스 로봇 실증,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2단계)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3종 5대 이상의 서비스 로봇 실증,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 국민체감실증형 컨소시엄 구성 예시 >



### 3. 사업비 편성기준

- (사업비 지원범위) 로봇·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비용, 로봇 융합모델 상세계획 비용, 로봇 활용 인프라 개선 비용, 위탁정산·이행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별표 5~7, 사업비 사용용도 및 산정 기준 등에 따라 사업비 편성, 집행계획은 사업계획서에 기재 필수

비목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총사업비 비율		
직접 사업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li> <li>*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x (참여개월수/12) x (해당 과제 참여율%)</li> <li>* 신규(현금), 기존인력(현물, 현금) 모두 계상 가능</li> <li>* 신규인력 채용예정인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 필수,</li> <li>* 잔여 인건비는 타 세목으로 변경 사용 불가</li> </ul> </li> </ul>	선택	10% 이내 (현물, 현금)	
	연구시설·장비비	로봇 도입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로봇 구매 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 HW, 필수SW(임베디드), 커스터마이징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로봇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li> <li>* 실제 판매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시 증빙자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수</li> <li>* 본 비용은 사업 종료 2개월 전 필수 집행되어야 함</li> <li>* 수요거점 특성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필요시 사업계획서 내 반영 필수이며 로봇 단가의 50% 이내 산정</li> <li>* 주변기기 설치비용, 부대 SW비용 제외</li> </ul> </li> </ul>	필수	-	80% 이상 (현금)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및 고도화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합관제시스템 구매 비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기본기능 및 부가기능 적용 여부 기준에 따라 책정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내 통합관제시스템 기능 확인표 작성 필수</li> <li>* 실제 판매이력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필수, 그 외 사업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정 가격임을 설명하는 자료 제시 필수</li> <li>* 1단계 사업비 중 직접비 30% 초과하는 경우(승강기 연동, 외부시스템 연동 등) 관련 사항을 사업계획서 내 기능 확인표에 명시 필수</li> </ul> </li> <li>○ 수요거점 내 관제 PC 별도 구성 <b>필수</b></li> </ul>	수요거점 집행 필수	(1단계) 30% 이내 (현금)	
	연구재료비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을 도입 및 실증하기 위한 수요거점 맞춤형 로봇 활용 인프라, 관제시스템 서버(H/W), 통합관제실, 부대설비 등 구축 비용</li> </ul>	선택	-	
	연구활동비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업비 위탁 정산 수수료, 이행보증보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정산수수료) 주관기관 편성</li> <li>* 10p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 참고</li> <li>- (이행보증보험) 사업비 집행기관별 편성</li> <li>* 지원국비의 0.6% 내외 산정</li> </ul> </li> <li>□ <b>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비용(선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 등 컨소시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산정 가능</li> <li>* 실제 실증을 위한 투입 기간만을 고려하여 가입</li> </ul> </li> </ul>	필수	10% 이내 (현금)	
		전문가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집행되는 <b>자문 비용</b>(여비 포함 산정 가능)</li> </ul>	선택		
그 외 세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업과 관련된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특근식대, 회의비, 인쇄복사비,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등</b></li> <li>-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따름</li> <li>* 회의비, 국내 출장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하며 가급적 편성 지양 요망,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li> <li>* 연구분석수행기관은 외주용역비, 컨설팅 비용 산정 불가</li> </ul>	선택			
간접사업비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관 공통지원경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기관 간접비 인정</li> <li>* 정부부처 및 비영리법인 경우에만 인정</li> </ul> </li> </ul>	선택	기관별 직접비의 5% 이내 (현금)		

## 수수료 편성 상세 사항

- **(필수사항)** 위탁정산수수료 및 이행보증보험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최종 심의 사업비에 따라 협약 시 조정
- **(정산수수료)**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관기관 일괄 산정 후 담당 회계법인에 납부

###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 >

구분(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가산금									
3천만원 미만	300,000	○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참여기관 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산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0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표준수수료의 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개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표준수수료 (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td> </tr> </tbody> </table>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 (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 (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0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0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000										
30억원 이상	2,043,000										

\*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정산대상으로, 1개 기관만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표준수수료를 준용하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참여기관이 발생시 가산금 추가

- **(이행보증보험증권)** 기관별 지원 국비의 0.6% 내외 산정 (심사 시 기관 재무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 사업비 활용 기관별 발급)
  - \* 선정 이후 사업비 신청 시,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必
  - \* 보증기간은 단계별 사업 협약일 ~ 종료일 + 3개월('27.3.31.)

- **(선택사항)** 생산물책임보험(PL) 등 컨소시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예시: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업기간 중 제작된 로봇 운영을 위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비용을 실제 사업 실증기간을 고려하여(6개월 ~1년) 본 과제 2단계 사업비(수수료) 편성 가능
  - \* 로봇의 제조·설계 등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 사업비 집행방식

-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비용은 수요거점의 사업비로 산정, 로봇공급기업 및 관제솔루션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집행
  - \* 불가피한 사유로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 등의 타당성 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

구분		집행방식	비고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도입비		수요거점 → 로봇공급기업 또는 관제솔루션기업	
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	사업비 집행기관 → 보험사	
	정산수수료	주관기관 → 회계법인	진흥원 지정 위탁기관

## 4.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공통)

### □ 신청자격

- 법인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 \*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 선정제외 사유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최종 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국민체감실증형)
  - \* (국민체감실증형) 전체사업비 10% 이내 현물 매칭 가능 (단, 인건비 한정이며 다른 세목은 현금 필수)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유사한 내용 및 제품으로 연구개발 성격의 과제\*를 기추진하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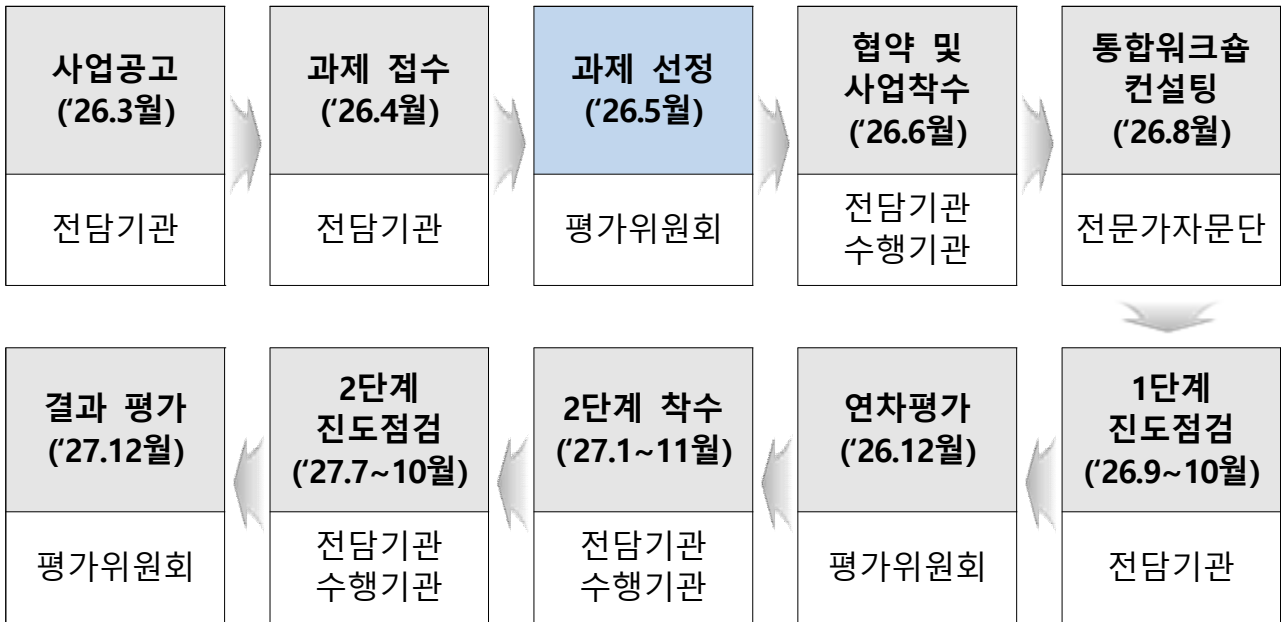
- \* R&D 과제 종료일이 본 사업 착수 전일 경우 및 R&D 과제 및 실증 사업 간 중복성 여부의 경우 평가위원회 시 지원 여부 결정 예정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사전 지원제외 기준
<b>검토 기준</b>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b>조치</b>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기타 세부 내용은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6.02.13) <별표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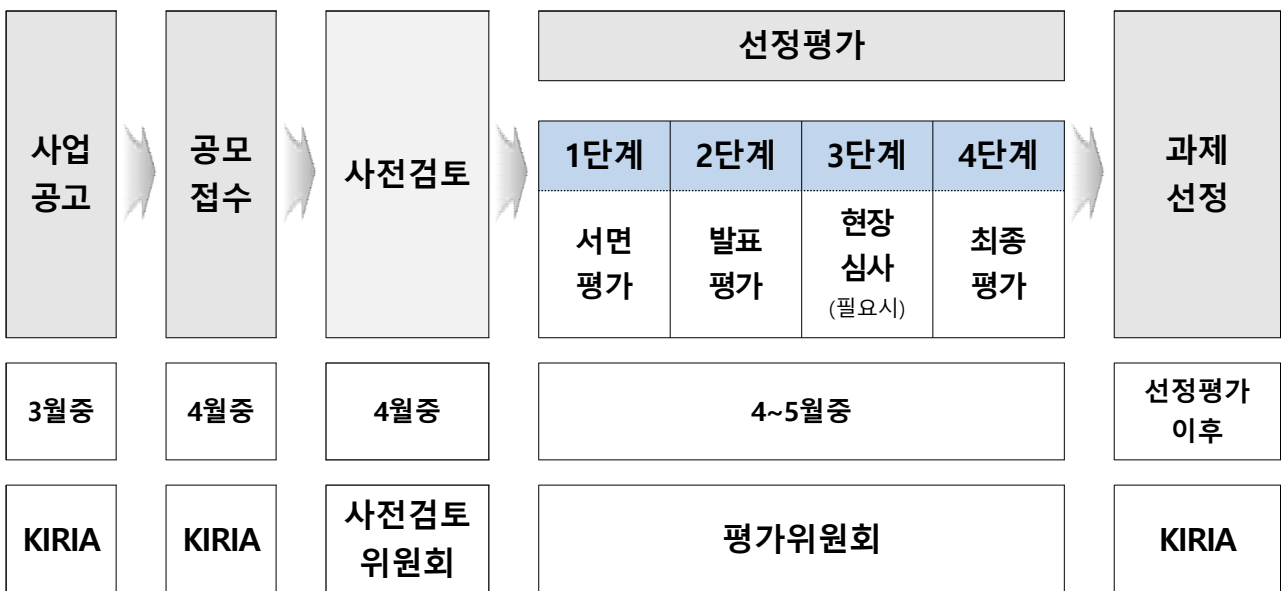
## 5.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 사업 수행 절차



\* 1단계 수행 컨소시엄의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진행 여부 결정

### □ 과제 선정 절차



\* 지원 과제 규모 및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안내 예정)

- (평가 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현장·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위원장으로 지정
- (사전검토)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회계사의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 자격 등 적부 심사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지원 서류의 적정성,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 자격 검토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 해당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근거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별표2)

- (선정평가)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회계사의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 자격 등 적부 심사

**< 선정평가 절차 및 내용 >**

구분		내용
1단계 서면평가	평가대상	◦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신청된 과제 전체
	평가방법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b>서면평가</b> - 사업계획서 심의, 제출 서류·신청자격 등 검토, S/W 개발 단가 적정성 검토
2단계 발표평가	평가대상	◦ 1단계 통과 과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b>대면평가</b>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주관기관 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사업비의 적정성 등 심의
3단계 현장심사	평가대상	◦ 1·2단계 통과 과제(필요시 진행)
	평가방법	◦ 로봇 기업 또는 실증처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심사
4단계 최종평가	평가대상	◦ 1·2·3단계 통과 과제
	평가방법	◦ 종합의견 검토요청서 기반 <b>서면평가</b> - 최종 과제 선정, 최종 사업비 결정

- \* 사전검토, 현장심사 외 모든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
- \* 평가위원회는 로봇기술, AI, 사업화 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
- \*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

□ 선정평가 기준 및 내용

① 1단계 서면평가 : 제출 서류·신청자격 서면 검토 및 서면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의 진행, S/W 개발 단가 적정성 검토

< 서면·발표 평가표 >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 부합성 (15)	◦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15
추진계획의 적정성 (40)	◦ 사업 목표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 과제 추진 체계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10
	◦ 수요거점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	10
	◦ 사업비 구성 및 비용산출의 적정성	10
사업성 및 파급효과 (25)	◦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우수성 및 안전성	10
	◦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성	5
	◦ 실증 로봇 활용모델의 확산방안(확산 및 활용 등)	10
수행능력 (20)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인프라, 인력, 기술 등)	10
	◦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b>합 계</b>		<b>100</b>

- \* 평가 세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 서면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지원제외'로 분류
- \* 1단계 서면평가의 'S/W 개발단가 적정성 검토' 결과는 각 평가 단계별 '사업비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② 2단계 발표평가 : 1단계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기준에 따른 발표 평가(총괄책임자) 및 질의응답 실시

- (평가점수 산정)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업 순으로 선정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지원제외'로 분류
- \* 평가 항목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동일

③ 3단계 현장심사(필요시) : 로봇 기업의 제품·시설·공장 또는 실제 로봇 활용 현장 확인, 현장심사 전 수행기관이 작성한 셀프 체크리스트 접수

- 현장심사는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축소 또는 생략 가능하며, 별도 접수 없이 지표별 심사 진행

\* 현장심사 결과는 최종평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며, 별도 탈락 과제 無

\* 셀프 체크리스트 서식은 추후 3단계 현장심사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배포 예정

④ 4단계 최종평가 : 발표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 (평가방법) 종합의견 검토요청서의 반영 사항 및 소명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

-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는 2단계(발표평가), 3단계(현장심사, 필요시) 평가 이후 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기업에게 통보

- 종합의견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및 소명내용을 기반으로 최종평가

#### □ 협약체결 및 국비지급

○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진흥원과 컨소시엄(주관, 참여기관) 간 전자협약 체결

\* 사업 관리시스템([www.kiria.org/pms](http://www.kiria.org/pms))을 활용하여 협약 진행 예정 (기관별 가입을 위한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 (국비지급) 국비지원금은 필요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 시 지급

\* 이행보증보험, 지정 은행 사업비 신설 계좌, 민간부담금 입금증 등

✓ 국비는 민간부담금 입금 완료 후 전액 지급. **협약 후 1개월 이내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방비의 경우 **지방비 매칭확약서**에 의거하여 국비 선지급 가능(단,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협약일 설정 및 입금 필수)

✓ 총사업비(국비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기존 계좌,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사업비를 사용(소요)하는 기관은 반드시 진흥원이 지정한 계좌개설, 진흥원이 지정한 사업비 관리 시스템(RCMS)을 사용해야 함. 필수사항으로 **지자체의 경우 반드시 가능 여부 확인하여 지원 필요**

✓ 사업비 집행 기관별 모두 제출해야하며 제출 세부 항목은 협약 시 안내 예정

##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6. 3. 19.(목) ~ '26. 4. 20.(월), 14:00까지
- (접수기간) '26. 4. 13.(월) ~ '26. 4. 20.(월), 14:00까지
-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b>사업관리 시스템</b>	<b>홈페이지 주소</b>	www.kiria.org/pms
	<b>공고번호</b>	KIRIA-PMS-2026-013호

- 과제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PMS) 홈페이지  
(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 오류 증빙(화면캡처)과 제출 서  
류 일체 압축하여 제출
  - \* [메일제목] 2025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유형)\_주관기관명\_참여기관명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서류)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부처·지자체	기관	기업		
필수 제출 <sup>1)</sup>	1	사업계획서	○			양식 1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	양식 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양식 3
	4	참여의사 협약서	○	○	○	양식 4
	5	현금·현물출자 협약서 <sup>2)</sup>	○	○	○	양식 5
	6	참여인력 근무 협약서	○	○	○	양식 7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	-
	8	법인등기부등본	-	○	○	최근 1개월 내 발급
	9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본))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sup>3)</sup>	-	○	○	수익 발생 법인의 경우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11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	○	○	-
	12	참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
	13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	○	-
	14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참여 제한 확인서 (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일체) <sup>4)</sup>	○	○	○	
	15	과제 중복지원 여부 협약서	○	○	○	양식 8
	16	로봇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	양식 9
해당 시 제출	1	필수 인증 보유 및 취득(예정) 협약서 <sup>5)</sup>	해당 기관 제출			양식 10
	2	지방비 납입 협약서	○	-	-	양식 11
	3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sup>6)</sup>	해당 기관 제출			양식 12

- 1) <필수 제출 서류> 서류 일부 누락 및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사전 지원 제외·심사 제외 될 수 있음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必(날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2) <현금 및 현물 출자 협약서> 국민체감실증형 과제는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출자에 대한 협약서 제출 필수, 현물 매칭은 인건비만 가능(전체 사업비의 10%). 인건비 현물 매칭 시
  - 3)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25년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23년, '24년 자료로 제출 가능하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시 감사의견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 必
  - 4)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NTIS 제재정보 검색 방법(로그인 필요) : NTIS 홈페이지 → R&D 과제 준비 → 제재 정보 조회 → 제재 조회 → 참여제한 여부 개별 조회(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결과 PDF 저장
  - 5) <필수 인증서류 제출 확인서> 신청 주체는 로봇 제품·사용환경 등에 요구되는 모든 필수 인증 사항을 제시 및 실증 전 필히 획득하여야 하며, 기획득·획득 예정인 인증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GMP(의료기기 등), KC(전기안전, 전자파 등),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KS B 7317 엘리베이터 탑승 로봇 안전성평가 확인서 등
  - 6)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신규 채용하는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제출
- ※ 위 제출 서류는 본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이며,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진흥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6. 2. 13.)
-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4~’28)」(‘24.1월, 범부처 합동)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공모안내서 (별첨 참고)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 범부처 합동)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 8. 문의처

-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담당간사 및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

구분	소속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사업 관련	서비스 융합팀	장현석 책임	053-210-9632	hsjang@kiria.org
		이가영 선임	053-210-9678	ga0@kiria.org
		주혜원 선임	053-210-9682	hwju@kiria.org
시스템 관련 (과제 신청·접수 시 시스템 오류 등)	기획예산팀	양영수 선임	053-210-9915	smcho@kiria.org
	호원소프트	시스템 고객센터	070-4047-7287	-

##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 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1회 내 이의 제기 가능. 단,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2단계 수행 및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PMS),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참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사업관리시스템(PMS)	과제접수부터 협약체결까지의 과정을 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등 관련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주관부처와 진흥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정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정부·지자체·기관·기업 등 주관기관(사업비 지급 받는 주체)은 필수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본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한 기관(컨소시엄 전체)은 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 활용조사 및 성과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실증사업 수행 중 본 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외부 판매, 렌탈 등)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 단,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고 협약서에서 인정한 항목은 내부 거래(판매) 허용
-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수행기관·기업은 로봇 활용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위해 향후 로봇 데이터팩토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을 권고
  - \* 산업통상부는 로봇 AI 개발 가속화를 위해 환경·동작 데이터 확보 및 AI 학습을 지원하는 ‘로봇데이터팩토리’를 ‘27년부터 구축할 계획
- 진흥원이 지정한 전용 계좌 개설 및 사업비 사용 기관 명의의 계좌 관리 필수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해석에 따름